대통령령 제 호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조합원에 대한 대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은 그 대출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.

제2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83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2(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) 조합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(이하 "대출등"이라 한다)은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<단서 신설>	제16조의2(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) ----------. 다만, 조합원에 대한 대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은 그 대출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.
제24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.	제24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의2. 제83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
5. ~ 23. (생 략)	5. ~ 2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